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9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권향엽·이병진·송옥주

이훈기 · 김문수 · 윤종군

장종태 • 어기구 • 문정복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철강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향후 대체재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반면,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CBAM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에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육성하여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 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략기술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철강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	및 해제 등) ①		
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u>전략기술을</u>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바이오, 철강 등을 포함한 전략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u>기술을</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